

의안번호	제574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
조례안

발의자	김종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5월 29일

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김종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5월 29일
발 의 자 : 김종필, 이동우, 김호경,
박지현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소방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·발전시키고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소방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소방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협 의 :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」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”(이하 “소방동우회”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.

제3조(회원의 구분)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사업)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4조에 따른 사업
2. 소방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강사 육성 사업
3.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
4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예산지원)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(大韓民國在鄉消防同友會)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·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 등) 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(이하 “소방동우회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
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소방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사업)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소방동우회 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
2.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
3.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
4.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

제5조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5조(재정)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소방 관련 경험과 지식공유 및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육성과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제4조(사업)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
 1. 법 제4조에 따른 사업
 2. 소방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 강사 육성 사업
 3. 소방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
 4. 충청북도지사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
 5.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비
- 나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4년 ~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다. 추계결과 : 24,000천원
 - － 화재취약철(봄철, 가을철, 명절 등) 화재예방 홍보사업 : 24,000천원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)	2차년도 (2025)	3차년도 (2026)	4차년도 (2027)	5차년도 (2028)	합계
세 입		-	-	-	-	-	-
		-	-	-	-	-	-
세 출	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화재취약철 화재예방 홍보사업	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재원조달	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계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	지방세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